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483 호

1975. 2. 7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920 호 :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
지시측량대행에 관한조례 3
- 제 921 호 :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조례
개정조례 7

◎ 훈 령

- 제 397 호 : 서울특별시경철국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4

◎ 고 시

- 제 22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소소재지고시 31
- 제 23 호 : 사료성분등록고시정정 32

◎ 공 고

- 제 16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계획이행지
일부변경공람공고 32
- 제 21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에정지지정일부변경공고 32

(이 면 계 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2 호 : 도농토지 구획 정리사업 일부환지예정지계획변경인가 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33
제 23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기간연기) 시행 인가공고.....	34
제 25 호 : 분뇨특별청소지역의제외 (비수거) 지역 지정공고.....	35
제 27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 지정공고.....	36
제 28 호 : 지하철본부청사이전공고.....	36
제 29 호 : 1975년 도서울특별시영세기업육성자금집행 요령중개정.....	36
제 30 호 : 동대문구청장직인 및제인개각공고.....	38
◎ 정 정 : 서울특별시조례제 913 호.....	39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지사측량대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2월 7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920 호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사측량대행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지사측량업무를 서울특별시지정측량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함으로서 동업무처리와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행업자지정) ① 환지지사측량업무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

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4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 5 조 (재정보증인 및 보증금액치)

①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 재정보증인 2인 이상(1인 재산평가액 5백만원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자의 지정을 받는자는 지정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일백만원 이상을 시장에게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청자 기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장은 제1항의 재정보증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거나 전항의 손해보증금으로 이에 충당할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 보증금이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당해 재정보증인 또는 대행업자에게 추징할수 있다.

⑤보증금은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의회) ①지정대행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지시 측량대행업자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정서 교부) 전조의 규정 에 의한 심의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

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8조(지역 및 대행업자의수) 대행업자의 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모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대행업자의업무 범위) 환지 지시측량 업무중 대행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소유의 신청에 의한 환지 지시측량, 다만 지적공부 시행고시 전일까지에 한한다.

2. 시장이 지시하는 지구내 현황 측량 및 경제측량.

제10조(오차의 범위) 측량 오차의 범위는 지적측량규정(1954.11.12 대통령령제951호)에 준한다.

제11조(대행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2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1.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2. 부정한방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없이 10일 이상 휴업 하였을 때

4. 대행업자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행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을 때

5. 업무상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사람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7. 기타측량 대행에 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조백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 13 조 (영업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월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수있다.

1.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들 거부 또는 방해 하였을 때

제 14 조 (업무보안) ①환지도서는 의부에 누설할수 없다. 다만, 환지지시측량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행업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할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업무수행중 알게된 환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은 이를 발설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대행업무 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부터 보고를 받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수있다.

②환지지시측량에 필요한 기본측량성과는 시장이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얻은후 사용하여야한다.

제 16 조 (측량의 신청 및 처리) 대행업자에게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의 측량신청절차와 신청서를 접수한 대행업자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17 조 (대행수수료) ①대행업자는 신청인으로 부터 환지지시측량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한다)를 징수 할수있다.

②전항의 수수료액은 별표 2와같다.

③환지지시측량에 필요한 기본측량과 제 9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은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8 조 (수수료의 수수시기) 수수료

는 신청시에 이를 수수함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한다. 다만, 신청을 취소하거나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이 부 칙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수
 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제 1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한다.

<별표 1.>

—지정 측량대행업자지정기준표—

- ① 측량사의 수 : 1 급 측량사 또는 지정 측량사 2 인 이상
- ② 측량사의 자격 : 전항의 측량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
 - 가. 환지업무에 3 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나. 지적 측량업무에 5 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다. 일반 측량업무에 7 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③ 시설규모
 - 가. 사무실 7 평 이상
 - 나. 전화 1 대 이상
 - 다. 측량기구 일체 2 조 이상
- ④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
 - 가. 법인, 불입 자본금 : 1,000,000 원 이상
 - 나. 개인, 재산평가액 : 5,000,000 원 이상
- ⑤ 특기사항
 지적 측량사가 확보된 업소는 우선 지정함

<별표 2>

대행업무수수료금액표

환지지시추량

구 분	수 수 료 액	비 고
1 ~ 20 필 까지	필 당 2,000 원	
21 ~ 50 필 까지	필 당 1,000 원	
50 필 초과	필 당 500 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5. 2.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하 점 생

인

◎ 서 별 특 별 시 조 례 제 921 호

서울특별시고등학교 학군설정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 2 조 제 1 항중 "5 개의 일반학
군"을 "6 개의 일반학군"으로

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 (비정의 예외) ① 통학이 극
히 불편한 중학교의 중학구 또는
학군에 속하는 중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후기학교에 배정
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합의 중학구 또는 학군과 후
기 학교는 별표 2 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군별 고등학교 및 소속 중학교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속 중 학교	고 등 학 교	소속 중 학교
공동학군	경 기	서울특별시	경 기	서울특별시
	경 동	전체중학교	계 성	전체중학교
	경 북		금 판	
	경 신		덕 성	
	환 일		배 화	
	대 신		보 성	
	동 대 부 속		서 울	
	동 북		삼명사대부속	
	동 성		수 도	
	배 명		숙 명	
	배 문		송 의	
	배 재		신 광	
	보 성		이 화	
	서 울		이 대 부 속	
	성 동		중 앙	
	송 문		진 명	
	양 정		창 덕	
	용 산		동 문	
	이 대 부 속		정 신	
	인 창		혜 화	
	장 충			
	중 동			

학 군 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중 한 흥 취	양 성 익 문		-
1 학 군	고 대 서 신 영 웅	려 일 별 일 훈 문	살 등 고 보 용 경 동 고 흥 신 영 서 겸 광 남 승 도	선 성 명 성 문 신 속 려 익 일 문 별 광 운 문 덕 봉
			성 신 성 한 창	신 대 부 속 성 문
			성 정 한 성 신 사 대 부 속 동 고 도 수 점 영 성 걸 도	신 신 성 속 구 려 봉 육 외 훈 암 광 (중) 봉
2 학 군	경 대 서 울 사 대 부 속 문	회 광 문	대 성 동 서 울 사 대 부 속	광 일 문 대 부 속
			경 회 동 서 울 사 대 부 속 휘	회 덕 서 울 사 대 부 속 경
			동 경 정 면	덕 회 화 목

학군 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영 훈	광 경 장 중 건 청 휘 재 체 한 국 삼 육 신 회 안 화 농 량 경 현 육		해 총 영 한 동 해 휘 상 체 한 국 삼 육 원 국 란 생 문 성 경 계 육
3 학 군	수도사대부속 영 동 한 영 오 산	수 도 덕 수 한 양 광 회 상 동 배 명 한 영 동 복 장 중 대 경 수도사대부속 성 수 건 국 천 호 동 신	무 학 한 양 수도사대부속 명 성	무 학 한 양 행 당 서울사대부속 계 성 승 의 옥 수 금 호 수도사대부속 성 수 명 성 천 호 영 파 알 신 영 동

학군 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일 은 상 배 국	신 광 문 재 악	
4 학 군	관 성 영 장 중 대 여 오	악 남 포 문 부 속 외 도 산	성 용 선 신 단 오 동 중 상 영 봉 장 성 강 영 당 동 강 남 유	신 산 린 산 국 산 양 부 속 도 포 천 문 남 남 도 산 일 서 강 한
			단 성 영 중 상	문 심 포 속 명
				성 용 신 상 보 중 상 신 강 영 한 봉 동 문 강 오 화 대 봉
				심 산 광 명 성 속 도 림 남 포 강 영 일 일 서 류 복 일 천

학 군 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공 함 신 립		
5 학 군	경 성 마 포 여 의 도 광 성	한 성 이 대 부 속 승 문 광 성 경 성 양 정 환 일 경 서 배 문 동 도 마 포 예 원 인 창 중 앙 수 동 취 송 대 문 수 동 도	명 지 홍 인	중 앙 금 란 이 대 부 속 홍 익 성 산 마 포 서 울 예 원 창 덕 숙 명 덕 성 문 명 진 명
6 학 군	대 성 명 지 창 암	중 앙 중 동 수 송 취 문 휘	동 명 명 지 선 일 예 일	창 덕 성 정 숙 명 덕 성

학군 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6 학 군		대 동 청 운 보 인 대 신 영 천 대 성 명 지 충 앙 영 락 연 회 서	성 정	중 문 진 명 배 화 상명사대부속 동 명 예 일 문 영 선 일 정 원 명 지 충 앙 연 회

< 별표 2 >

중학교중학구 또는 학군소속중학교와 배정배제후기학교

중학교중학구 (학군) 와 해당중학교			배정배제고등학교	
학 구 (학군)	해 당 중 학 교			
	남	여	남	여
상 계 학 구	재 현	상 계	송문, 이대부, 배문, 화일, 영훈, 용문	금관, 이대부, 보성, 신광, 서울, 상명부
천 호 지 역 (4 학군)	천호, 동신, 일신	천호, 영파, 일신	송문, 이대부, 배문, 화일, 오산	
영 동 지 역 (5 학군)	온 광, 상 문	영 동	송문, 이대부, 배문, 화일	
오 류 지 역 (9 학군)	유 한	오 류	경동, 배명, 상동, 장승, 흥익	상명부
화 곡 지 역 (10 학군)	공 함	화 곡	"	상명부, 단문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국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5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 서울특별시훈령 제 397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

별표

서울특별시경찰국 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4 항중 "공화경비대장"
다음에 "및 22 특별경비대장"은 삽
입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수별	일련 번호	전 명	결 재 권 자				비 고
			제 장	과 장	담 당	관 국 장	
공 통 사 항	1	경찰주요업무계획및 지침					○
	2	주요행사 계획					○
	3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자체사고 중요 사건 및 재난사고 발생처리					○
	4	주요 간행물 발간및 발표사항					○
	5	직 원 군 태 가. 파장급 나. 경위이상 다. 경사이하					○
	6	시간외 근무명령 가. 파장급					○

가항별 일련 번호	명	결 제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공통 사항	나. 경위이상		○			
	다. 경사이하	○				
	7 경위이하 사구분장		○			
	8 과내 직원 표창상선		○			
	9 소관업무 계획 수립		○			
	10 소관업무 심사 분석		○			
	11 자료 조사 및 정기 보고		○			
	12 국내 왕복문서 접수처리	○				
	13 수합 문서 처리	○				
	14 수리치 아니한 문서의 반려	○				
	15 진정 탄원 처리		○			
	16 진정 탄원처리 결과 통지	○				
	17 소환장 발급	○				
	18 제증명 및 확인증 발급	○				
	19 출장 복명서		○			
	20 수배 및 폐제	○				
	21 과내 정보비 출납		○			
	22 근무일지 처리	○				
경무	1 직원복무 태세확립 (복무규율, 직무환 경, 사기 및 능률) 가. 중요계획 및 방침수립 나. 세부실시 계획 및 진도		○		○	
	2 직원 공상, 순직등 보고 가. 공상보고 나. 순직보고 다. 사망보고			○	○ ○	

가별 번호	일련 번호	명	결 제 권 자				비 고
			계장	과장	담당관	국장	
경무	3	감독순시 가. 순시계획 나. 순시근무지점 및 결과처리			○		
	4	당직근무 지정		○			
	5	경관예식, 의전 행사 회의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	○	
	6	자체 경비계획 및 지도감독		○			
	7	직원 건강관리		○			
	8	경무협회, 지장저축		○			
	9	경찰행정 자문위원회 운영			○		
	10	순직, 사망자, 조귀금 및 경년비임자 전별금 각출		○			
	11	경찰사 전찬				○	
	12	경찰회보 발간		○			
	13	교육. 입교자 지정 가. 경점이상 나. 경위이상 다. 경사이하			○	○	
	14	교육훈련 종합계획 (지장훈련 포함)			○		
	15	교육훈련 세부실시 계획평가		○			
	16	상무회 운영		○			
	17	경찰관 승진시험 실시				○	
	18	순경 채용시험 실시				○	
	19	해외유학 대상자 선별추천				○	

기능별	일련 번호	건 명	결 제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경 무	20	민원서류 접수 배부 및 검열지도 감독	○				
	21	가출인 미아의 수배 및 해제	○				
	22	유신물의 수배 및 해제 배포	○				
	23	민원의 상담(구두, 전화)처리	○				
	24	경찰 조직 및 정원 관리				○	
	25	행정 간소화(업무제도 연구, 개선)				○	
	26	경찰기본 운영계획					
		가.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나. 중요업무 계획 선정수립				○	
		다. 정보운영시행 계획 및 정보비 배점				○	
		라. 수정계획 및 심사분석			○		
		마. 월상 중요업무 계획				○	
	27	치안핵심 정기감사				○	
	28	도서실 유지 관리					
		가. 도서의 구입, 신청	○				
		나. 도서의 비치, 열람, 대출 및 관리	○				
	29	예규, 고시,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의 심사, 심신				○	
	30	법령의 시행 및 법령집의 배포 보존관리	○				
	31	법령의 실의 회시			○		
	32	타기관 법제 관제문서의 접수관리	○				
	33	소송사무 지도		○			

기능별	일련 번호	구	명	결 재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경 무	34	인사처리 지침					○	
	35	경위 이상 경찰관의 임용 (승급, 전과제외)					○	
	36	경사이하 경찰관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전직					○	
	37	경사이하 경찰관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및 면직				○		
	38	청원경찰관 및 고용원의 임용			○			
	39	전전부 경찰관 정규임용				○		
	40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임명					○	
	41	정기승급 및 전과			○			
	42	승진 후보자 명부 결정					○	
	43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					○	
	44	기능직 및 고용원 채용시험 계획					○	
	45	특별채용 후보자 추천				○		
	46	정보경찰관 전보 및 단기 전보의 승인			○			
	47	직권 징계의 집행 가. 경위이상 나. 경사이하				○		
	48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				
	49	신분증명서 발급 및 흉장의 대여 회수		○				
	50	직원 비밀취급 인가 (2급 이상)			○			
	51	명예경찰관 위촉					○	

기능별	일련 번호	내 容	결 제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경 무	52	훈.포장 및 표창(감사장 포함)				○	
	53	공무원 연금 사무		○			
	54	연금관계기록, 유지관리	○				
	55	감찰업무 처리 지침					
		가. 중요지침				○	
		나. 일반지침			○		
	56	징계위원회 운영					
		가. 경위이상의 징계요구				○	
		나. 경사이하의 징계요구 및 징계 지시		○			
		다. 직할대 및 경찰서 징계업무지 도 감독		○			
	57	비위 관련 인원(진정) 및 첩보의 조사 처리					
		가. 청와대 하명사함				○	
		나. 경정이상				○	
		다. 경감, 경위			○		
		라. 경사이하		○			
58		선해자추천 및 제고 대상자 처리					
		가. 경정이상의 장려 및 제고				○	
		나. 경위, 경감의 장려 및 제고		○			
		다. 경사이하의 장려 및 제고	○				
59		타기관 출두 및 소환					
		가. 경정이상				○	
		나. 경위, 경감			○		
		다. 경사이하		○			

기능별 일련 번호	명	결 재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경 무	60	소송 사건 처리				
		가. 경위이상		○		
		나. 경사이하		○		
	61	감찰 특명사항 조사보고			○	
	62	감찰 정보비 집행		○		
	63	세출 예산의 편성과 배정			○	
	64	경쟁 입찰 업무			○	
		가. 50 만원이상			○	
		나. 50 만원미만		○		
	65	결산서 제출		○		
	66	예산증감 조치		○		
	67	국유 재산 관리		○		
	68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		○		
	69	세출예산의 집행		○		
	70	예산요구서 제출		○		
	71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 보고서		○		
	72	급대여품 출납		○		
	73	비품출납 및 보관전환		○		
	74	경리관제 사부의 인수, 인계		○		
	75	농원급식비 지급		○		
	76	자금 배정		○		
	77	세출 세입의 현금출납 계산서		○		
	78	국고세입			○	
	79	입찰등록 사항		○		
	80	과오납금의 정리		○		

기능별	일련 번호	명	결 계 권 자				비 고
			재장	과장	담당관	국장	
경 우	81	소모품 출납		○			
	82	납세 필증 발행	○				
	83	유치인 실적보고서		○			
	84	경쟁 입찰 실적보고서		○			
	85	경찰편제 기사 취재요청 승인				○	
	86	직원 방송 출연 승인		○			
	87	경찰청사 촬영 승인			○		
	88	경찰관계 영화촬영 협조 승인		○			
	89	경찰악대 내외행사 지원		○			
	90	방송실 운영	○				
	91	경찰후생 금고		○			
	92	서점세신 업무					
		가. 월배보고				○	
		나. 추진위원회 개최			○		
		다. 각과, 시, 대, 추진실적		○			
	93	경찰두보 발간		○			
보 안	1	제시험에 관한사항 (원동기, 화약류, 면허)				○	
	2	사행행위 신규 허가				○	
	3	홍신업 허가				○	
	4	사행행위 업소 및 홍신업소 행정 처분			○		
	5	종포 소지 허가		○			
	6	타기관 교발사건 처리 및 위반사항 통보		○			
	7	사적장 설치 허가			○		

기능별	일련 번호	적 명	결 재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보안	8	총포, 화약류 제조허가 전달		○			
	9	총포, 화약류 판매수리 허가			○		
	10	사해해위 허가 갱신		○			
	11	광고물 정비		○			
	12	광고물 설치허가 (야립, 옥상, 공중 살포)		○			
	13	각종 안전사고 처리		○			
	14	청소년 보호 및 아동 복리법 위반 지도 단속		○			
	15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 운영			○		
	16	청소년 선도 보호단체 지도감독		○			
	17	공연장 조사 및 임검	○				
	18	인장업 지도 단속		○			
	19	죽심업무 지도		○			
	20	원동기 검사	○				
	21	죽심 청구서 용지 출판관리	○				
	22	외군 성적 평가			○		
	23	외군업무 지도 단속		○			
	24	무허가 건축물 단속		○			
	25	방법 업무지도		○			
	26	호구조사	○				
	27	산림 보호단속		○			
	28	불법 수렵단속		○			
	29	원동기 설치 시공업 허가		○			
	30	검문소 및 야간초소					

기능별	일련 번호	건 명	결 과 권 자				비 고
			세장	과장	담당관	국장	
보 안		가. 설치				○	
		나. 운영		○			
교 통	1	자동차 교습소 지정 및 취소				○	
	2	운전면허 시험 실시 계획			○		
	3	교통안전 시설 계획 (50 만원 이상)			○		
	4	면허시험 관리비 집행 (50 만원 이상)				○	
	5	교통안전 시설 계획 (50 만원 미만)		○			
	6	면허시험 관리비 집행 (50 만원 미만)		○			
	7	운수회사 평점제 실시			○		
	8	자동차 교습소 (시설 및 학사감사)		○			
	9	교통지도 단속 계획		○			
	10	교통 통계 관리		○			
	11	교통사고 방지대책		○			
	12	시 공로 행정에 대한 공안협의		○			
	13	운전면허시험 출제		○			
	14	운전면허 시험 종합 성적표		○			

기능별	일련 번호	내 용	절 차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교 통	15	운전면허 시험관리	○				
	16	운전면허 적성검사	○				
	17	운전면허 취소	○				
	18	운전면허 재교부	○				
	19	운전면허용 장비, 기기 관리	○				
	20	운전면허 행정처분	○				
	21	모범운전자 선발 및 자격취소		○			
	22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단속		○			
	23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			
	24	교통법규 위반자 출두지시서 관리 및 처리	○				
	25	교통사고 처리	○				
	26	교통기 능 순찰	○				
	27	법규 위반 및 사고 차량 행정 처분		○			
경 비	1	중요시설 방호 계획			○		
	2	무기단약 및 화학장비 출납(군부대 간)		○			
	3	다중범죄 진압협력운용		○			
	4	야간 통행증 발급		○			

기능별 일련 번호	명	결재권자				비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경비	5	중요시설 지도 방문 계획 및 청원 경찰 운영	○			
	6	경호경비 및 행사 경비 계획			○	
	7	상황실 운영 지도	○			
	8	사태별 경계군부 결정		○		
	9	작전훈련, 교육실시	○			
	10	임시 편성부 대운영	○			
	11	차량비 예산사용 계획 및 용품 구입 비용의	○			
	12	경찰장비 및 용품 운영 관리(인수, 배정, 폐차)	○			
	13	무기탄약 및 화학장비 출납(치안국 간)	○			
	14	무기탄약 및 화학장비 출납 (국, 서대간)	○			
	15	기마대 운영 및 지도감독		○		
	16	차량경기점검 및 수리	○			
	17	차량용품 및 유류 출납	○			
	18	차량등록 말소 신고, 계속 검사 신청	○			
	19	작전 계획 및 지시			○	

기능별	일련 번호	명	결 재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경 비	20	전격대 운영	○				
	21	경호 명령				○	
방 위	1	민방공 조직 및 기본계획				○	
	2	예비군 긴급 동원				○	
	3	우수예비군(지역, 직장)선발			○		
	4	예비군 순직 및 공상 보고			○		
	5	예비군 무기탄약 관리유지		○			
	6	예비군 급식에 관한 사항		○			
	7	보충역 방위 소집자 운영		○			
	8	민방공교육 훈련 및 제공		○			
	9	민방공 시설 관리 유지		○			
	10	예비군 합동 감사		○			
	11	예비군 자원 관리	○				
	12	예비군 무기고 신축 승인			○		
통 신	1	인수통신 장비의 사설 및 배정				○	
	2	무선전화 교신 약부호 제정 및 개정			○		
	3	통신 자재 보관 및 출납		○			
	4	경찰 통신비 예산 집행		○			
	5	통신기기, 시설, 이설, 철거		○			
	6	통신장비 관리	○				

기능별	일련 번호	건 명	결 제 권 자				비 고
			계장	과장	담당관	국장	
통신	7	통신기기 시설 보수 유지	○				
	8	암호자재 관리, 배포 및 회수 반납	○				
	9	경찰전문 발수신	○				
	10	112 및 지령업무 관리 운영	○				
	11	정보기 시설(증설)				○	
	12	잠금비 고용원 임용제청		○			
수사	1	유치장 관리 지도 감독		○			
	2	호송업무 지도 교양		○			
	3	수사 정보비 청구 및 집행			○		
	4	수사 및 감식 장비 배정		○			
	5	계영장의 청구		○			
	6	경제사범 및 마약사범 수사 처리		○			
	7	민원(고소, 고발, 진정)사전 수사송치		○			
	8	수사지휘 사전 수사처리		○			
	9	감식, 감시, 검증	○				
	10	우범자 관찰보호	○				
	11	사전 추송서 처리	○				
	12	감식자료 수집 및 관리	○				
	13	압수물의 보관 관리	○				
	14	경미한 수사 보고	○				

기능별	일련 번호	명	결 재 권 자				비 고
			재장	파장	담당관	국장	
현 사	1	중요도난 (정부요인 , 외국시점) 구사				○	
	2	3 급공무원 이상의 독직사건				○	
	3	중요범죄 사건 수사 및 지도			○		
	4	외국인 범죄 사건 수사		○			
	5	일반형사 범죄사건 수사		○			
	6	수사지휘 사건 수사처리		○			
	7	제 영장 청구		○			
	8	공소 제보 업무 처리	○				
	9	수송서 처리	○				
	10	형사민원 사건		○			
	11	우범자 테스트 작성 비치		○			
	12	형사비상 (화색) 배치 훈련			○		
	13	초농 수사대 운영		○			
	14	장물검표	○				
	15	경미한 수사 보고	○				
	16	형사정보비 청구 집행		○			
	17	타시도 사건 수백 (증은)		○			
점 보	1	간첩 검거 및 처리				○	
	2	사회적 거론 대상에 대한 중요 정보 처 정보 처리				○	

기능별 기능번호	일련 번호	건 명	결 제 권 자				비 고
			제장	과장	담당관	국장	
정 보	3	간첩역용 공작			○		
	4	중요 대공 전략 정보			○		
	5	안전대책(경호)업무 지도 감독			○		
	6	요시찰인 조정(삭제, 격하, 승격)				○	
	7	정보사업 검거처리		○			
	8	용의공작 승인		○			
	9	모의간첩 훈련			○		
	10	각 분야 첩보처리(상보, 통보, 하달)		○			
	11	불온전단, 벽보, 낙서사전발생		○			
	12	신원조사 결과 통이사항			○		
	13	대공 정보비 배정 및 집행		○			
	14	정보망 조직 운영		○			
	15	요시찰인 동향	○				
	16	주민등록 업무 취급	○				
	17	공소 보유자 동향	○				
	18	정보 장비 관리운영(사용, 출납, 지원)	○				
	19	진급 신원조사		○			
	20	용의공작(차제)	○				
	21	요시찰인 사무처리(요시, 경호요시, 관찰보호자 편입 전출입)	○				

기능별	일련 번호	내 용	결 재 권 자				비 고
			제자	과장	담당관	국장	
정 보	22	불온서신 조사처리	○				
	23	신원조사 및 사실조사 접수처리 (하명, 복명, 회보)	○				
	24	적발우편물 통신내용의 분석처리	○				
	25	반공계몽 활동	○				
	26	법국민 대공, 요원회 사업		○			
	27	거동 수상자 신고 처리		○			
	28	집단사태 관련자 연행 신병 처리				○	
	29	긴급 신원조회	○				
	30	복괴선전물 회수처리		○			
외 사	1	외교관 및 외국 공관 농항 파악				○	
	2	외국인 입국 사건 수사 및 송치		○			
	3	공의공작 지도		○			
	4	밀항자 단속 및 강제 송환자조사처리		○			
	5	외국인과 관련된 진정조사 처리		○			
	6	외사정보비 출납		○			
	7	외국인 및 외국인 단체 농항	○				
	8	외사 정보망 조직운영	○				
	9	외사요시인 및 용의자에 대한 내사 관할업무	○				

기능별	일련 번호	건 명	결 제 권 자				비 고
			세장	과장	담당관	국장	
외 사	10	출입국자 동점과약	○				
	11	불온 외국서적 및 불법 도입 자행물	○				
	12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 허가에 관한 조사	○				
	13	외사 관제 신원조사처리 (판문점방문 신청자 포함)	○				
	14	강제송환자 및 자비 송환자 심사	○				
	15	교포 동향 파악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2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소소재지고시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사업소 설치

조례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주택 건설 사업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5 . 2 . 3 .

서울특별시장

다 음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사동 영동 제 1 자구 246 구획의 1	

◎ 서울특별시고시 제 23 호

서울특별시사료성분공고고시정정

사료관리법(법률제 2740 호)이 74.12.26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 197 호(74.12.2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 호(75.1.7)고시사항중 유효기간은 삭제함을 공고합니다.

1975. 1.31

서울특별시장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6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
계획예정지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창동, 경인, 역촌, 망우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에정지 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와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공고합니다.
2. 환지에정지 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아제 한다.

3.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 1. .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전명: 창동, 경인, 역촌,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공농동, 영등포구 신정동, 신원동, 목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신사동 일부토지
3. 변경필지수: 30 필지
4. 변경조서 및 도면: 조서 - 별첨
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제 21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에정지
지정일부변경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수가, 경인,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7 호 (74.12.24)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일부토지에 대해서 환지예정지 지정을 별첨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제 56조와 해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와 관할구청 및 관할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2. 1

서울특별시 장

첨부: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조사별첨, 도면 생략(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관할구청과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서울특별시공고 제 22 호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일부환지
예정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
예정지변경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의 변경인가를 건설부 공고 제 131 호 (74.12.19)로 득하였으므로 동법 제 47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별첨 도서와 같이 변경인가하고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고일로 부터 사용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됨. 다만, 정지공사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에정지의 사용수익을 할수없는 토지는 공사가 완료되거나 기타 다른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3.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지정도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이공고에 따른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것이나 수령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환지에정지변경도: 별첨 (생략)

환지에정지변경도서: 별첨

1975. 2.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 23 호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기간연기) 시행인가공고

1. 청량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7개지구에 대한 사업변경인가 (전설부공고제 7호 75.1.11)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조 및 제 13조와 동법시행령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란 공고한다.
2. 관제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1975.2. 3

서울특별시

3. 변경사항 (사업기간 연기)

사 업 명	당 초	변 경
청 량 리 지 구	1950.10.21-1974.12.31	1950.10.21-1976.12.31
신 당 "	1940.10.21-1974.12.31	1940.10.21-1976.12.31
창 동 "	1967.1.21-1974.12.31	1967.1.21-1976.12.31
역 촌 "	1967.1.21-1974.12.31	1967.1.21-1976.12.31

사 업 명	당 초	변 경
경 인 지 구	1968.1.18-1974.12.31	1968.1.18-1976.12.31
영 동 1 지 구	1968.1.18-1974.12.31	1968.1.18-1976.12.31
도 봉 지 구	1968.1.23-1974.12.31	1968.1.23-1976.12.31
영 동 2 지 구	1971.8.24-1974.12.31	1971.8.24-1976.12.31

◎서울특별시공고제 25 호

분 노 특 별 청 소 지 역 의
제외(비수거)지역지정공고

오물청소법제 3 조제 1 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지역

에서 제외(비수거)되는 분노의 비
수거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1.

서울특별시 장

구 별	동 명	제 외 지 역	비 고
천호출장소	길 동	전 지 역	
영동출장소	잠 원 동	"	
"	서 초 동	"	
"	내 곡 동	"	
"	세 곡 동	"	
"	일 원 동	"	
"	잠 실 동	"	
양서출장소	파 해 동	"	
동대문구	신 내 동	3 통, 6 통	
도 봉 구	공 능 동	6, 8, 9, 10, 11, 12, 13, 14, 15, 18, 20, 21, 22 통	
관 악 구	사 당 1 동	1, 2, 3, 4, 5, 8, 9, 10, 11, 13, 14, 19, 20 통	
천호출장소	명 일 동	5, 6, 8, 18, 15, 16, 12, 19, 34 통	

◎ 서울특별시 공고제 27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당지에서 지정한 수출품 생산 지
정업체중 소재지, 회사명이 변경된

다음 업체를 중소기업 수출품 생
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
정 공고한다.

1975. 2. .

서울특별시장

다

음

지 정 취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기업 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 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수출 품명
617	삼풍 산업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남가좌동 5 - 329	김학수	앨범	617	경원 산업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 101-2	김학수	앨범

◎ 서울특별시 공고제 28 호

청 사 이 전 공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청사를 다음
과 같이 이전공고한다.

1975. 2. 5.

서울특별시장

1. 이전일자: 1975. 2. 7
2. 이전전소재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 892-70
3. 이전후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서소문동 120-14

◎ 서울특별시 공고제 29 호

1975년도서울특별시
영세기업육성자금집행요령중개정

상공부고시제 10496 호 (72.2.4)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요강 제 13

조 및 동충개 1332-99(75.1.24) 에

의거 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75.2.6

서울특별시장

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융자대상업종 및 지원우선업종
제조업에 한하되 다음업체에
우선지원한다.

가. 생활필수품 생산업체

나. 수출품 생산업체

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제
열화 업체

제 6 항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융자기간(1)시설자금: 5년이내

(2년이내거치기간포함)

(2)운전자금: 3년이내

(1년이내거치기간포함)

제 7 항 "가" "나" "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청(소)장은 75.3.5까지
관내전영세기업체를 대상으로 사
전수용 희망업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구청(소)장은 관내영세기업체
명단과 전 "가"호에 의거 조사
된 수용희망업체 명단을 75.3.15

까지 관할 국민은행 본 지점장
에게 추천 통보하여야 하며, 국
민은행 본지점장은 구청(소)장
이 추천한 업체중에서 융자업체
와 금액을 결정 대출한다.

융자적격업체가 구청(소)장의
수용희망업체로 추천을 받지 못
한 경우 관할 국민은행 지점장
이 추천의뢰 하여온 융자대상업
체에 대하여는 구청(소)장은 영세
기업체임을 확인 즉시 융자추천
하여야 하며 기추천한 업체중
융자불가능 또는 포기업체가 발
생한 때에는 대체 선정 추천한다.

(1) 시설자금: 배정된 시설자금 한
도의 2배이상으로 하며 해당하
는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일
괄 추천한다.

(2) 운전자금: 배정된 운전자금 한
도의 3배이상으로 하며 해당하
는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일
괄 추천한다.

마. 국민은행 본 지점장은 추천된
업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
는한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
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즉시

대출하고 그 결과를 추천 구청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
청 (소)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응자 및 대출현
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적기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 항목 다음과 같이 한다.

9. 구청 (소) 별 응자추천 한도액

개조정

시장은 응자추천상황 및 대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 (소) 별
자금배정 한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30 호

다음과 같이 당시산하 동대문구청
장 직인 및 계인을 폐기하고 개각
하여 사용코자 이문 공고한다.

1975.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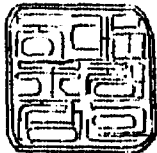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장

사용일시 : 1975.2.1 09:00

개각인 : 동대문 구청장직인및계인

폐 기 인 영

직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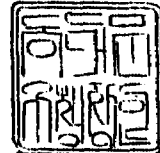


계 인



개 각 인 영

직 인



계 인



정

정

1. 시보제 479호 (75.1.23) 중 120-4 및 120-5 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제 913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소설치조례"의 내용중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2. 정정내용

가. 제 4 조 (소 장) 제 ①항중 "지방부이사관 또는"을 삭제한다.

나. 제 5 조 (하 부 기 구) 제 ③항중 "설계, 시공 및 위생설비분야 담당 각 2인을 두되 지방계약직원으로 보한다"를 "(설계시공 및 위생설비분야담당) 지방계약공무원들을 둘 수 있다"로 정정한다.